

2015.12.09

'한 · 중 FTA 12월 20일 발효'

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은 9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-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하였고,

2015년 12월 20일부터 발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
중국은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공식 발효국입니다.

* 한·중FTA는 14년 11월 실질타결, 올해 6월 양측 간 정식 서명하였음

중국의 GDP(10.4조 달러)는 한국(1.4조 달러)의 7배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중국은 매년 GDP 7% 이상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.

한·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

석유화학, 철강, 기계류와 패션, 기능성 의류,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

2015.12.09

주요내용

1. 양허 현황

□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후 20년 이내에 관세철폐

- ※ 품목수 기준 (우리) 92.2%, (중국) 90.7%
- ※ 수입액 기준 (우리) 91.2%, (중국) 85%

[공산품] (임산물 포함)

□ 전체 공산물 분야 품목의 90% 이상을 최장 20년내 관세철폐

- ※ 중국은 품목수 20%, 수입액 44%를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고, 품목수 72%, 수입액 66%를 발효 후 1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
- ※ 우리는 품목수 59%, 수입액 54%를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고, 품목수 90%, 수입액 80%를 발효 후 1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
- ※ 자동차의 경우, 중국측의 개방 불가 입장 및 우리의 현지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모두 시장 개방에서 제외

[농수산물]

□ 우리는 품목수 기준 30%, 수입액 기준 60%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, 전체 수입액의 30%를 양허 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수준으로 시장을 보호

- ※ 쌀, 양념 채소류, 육고기, 과실류, 수산물을 비롯한 국내 주요생산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하여 시장 개방 최소화

□ (초민감품목)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581개 농산물은 양허제외 또는 TRQ, 부분감축 등으로 양허하여 관세 철폐대상에 서 제외

2015.12.09

2. 협정관세 적용

□ 협정 발효 적용시점

- 협정발효일 (15년 12월 20일) 오전 0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

-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
- 수입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관세 또는 보증금의 환급 신청(사후신청) 가능
다만, 수입자는 수입시에 자국법령에 따라 세관당국에 미리 신고를 할 경우에만 사후신청 가능

3. 원산지증명 방식

□ 발급방식

- **기관발급** (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자국법령에 따라 발급)
- **개별발급**

□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

- **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**
-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전,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

□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

-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**미화 700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**에 대해서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증명서 면제